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의 분장사무에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관세청 소속기관인 인천세관에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의 신설에 따른 신규 장비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 및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7급 3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관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3. ~ 2.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관리
별표 2 중 총계 “365”를 “366”으로 하고, 일반직 계 “364”를 “36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54”를 “355”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4,903”을 “4,909”로 하고, 일반직 계 “4,903”을 “4,90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538”을 “4,544”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9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 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7의3.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u> <u>안전 · 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u> <u>괄 · 관리</u>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2]

관세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65</u>	<u>366</u>	+1
·	·	·	
·	·	·	
일반직 계	<u>364</u>	<u>365</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54</u>	<u>355</u>	+1
·	·	·	

[별표 3]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903</u>	<u>4,909</u>	+6
일반직 계	<u>4,903</u>	<u>4,909</u>	+6
·	·	·	
3급 또는 4급 이하	<u>4,538</u>	<u>4,544</u>	+6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5